

2023년 최저임금고시

「최저임금법」

제10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9,620원

◆ 월 환산액 2,010,58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
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기준최저임금 적용 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31.

2022. 08. 05.
고용노동부장관

